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13호 2016. 10. 19(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1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3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문화원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원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2,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3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양성평등기본법(2015.12.2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관계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6.1.1.시행)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지속 운용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총칙(제1조 ~ 제4조)
 -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확대하여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제5조 ~ 제16조)
 - ▷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확대 실시
 - ▷ 자치법규 제·개정, 계획, 사업 추진 등 직무 수행 시 성평등 관점에

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양성평등위원회(제17조 ~ 제26조)

▷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 양성평등기금(제27조 ~ 제33조)

▷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 확대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6.1.1시행)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을 지속운용하고자 조항 신설 (제29조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2) 또는 Fax(560-27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 관계법령 발취 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2015.12.23 시행)이 변경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6.1.1 시행)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지속 운용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제1조 ~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확대하여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제5조 ~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확대 실시 ○ 양성평등위원회(제17조 ~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구성 등 정비 ○ 양성평등기금(제27조 ~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금 명칭 변경 및 기금의 용도 확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개 정 안	“별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관계 법령 발체	“별지 참조”
관련 사업 계획	“해당 없음”
예산 수 반 사항	“해당 없음”
기타 참고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청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 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에 대한 사업
4. 여성 노인 및 장애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보호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기관·단체
2. 평등부부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4. 양재수강교실 운영사업
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7.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 ②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③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구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은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2015.7.2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별지 각 호 서식 변경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 전화 032-560-4442, 팩스 032-560-2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관련 부분 수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별지 각 호 서식 변경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 취 : “별지 참조”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2조에 따라”로, “관리 운용 하는데”를 “관리·운용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중전의 제2조의1)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서구

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기예금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판로개척등”을 “판로개척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의1,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로 한다.

제5조의2(중전의 제5조의1)제1항 중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망, 질병 기타”를 “질병 및 그 밖의”로,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4(중전의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개회”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3)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매년도초”를 “매년도 초”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내외”를 “3퍼센트 내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환방법등”을 “상환방법 등”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6항의”로, “일반시중은행”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환기간전이라”를 “상환기간 전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이외”를 “목적 이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으로”를 “기업지원과장으로”로, “업무처리 주무담당”을 “기금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제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출납폐쇄후 80일이

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구의회”를 “서구의회”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	------	------	--------

* 위 칸은 작성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신청서

업 체 명	대 (한 글)	
법인등기번호	표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	자 (연 락 처)

본 사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소유구 자가 · 임차

공 장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소유구 자가 · 임차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면적 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	--------------	------

회사홈페이지 (이메일)	연락 책임자 (휴대폰)
-----------------	--------------------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출액	부채비율 (%)

신청금액 백만원	우대사항 (해당사항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 이전기업 (발생일후 1년 이내)	서구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2년 이내)	서구 경제단체 가입	고용기업 (20년도)
							고용인원 ()인

대출기간 선택(✓)	<input type="checkbox"/> 2년(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3년(1년거치 2년간 4회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4년(1년거치 3년간 6회 분할상환) ※ 3억초과만 선택가능
---------------	-----------------------------------	---	---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	산 () () ()	대출 금리	%
------	----	----	------------	-------------------	---------------------	----------	---

대출상담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 기타인 경우)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인)	
------	---	--

※ 상담확인 도장 필수	(담보제공방법이 보증서인 경우) 보증기금(재단)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인)	
-----------------	---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용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3. 국세납입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증빙서류(해당시 제출) 6.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1. 업체개요

○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대표자 주요경력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생산품의 개요

제 품 명	특 성 및 용 도

2.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 융자금의 사용목적 :

○ 융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 금액 합계는 신청 금액과 동일)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원부자재구입			
판매관리비			
세금과공과			
운반비			
기타			
계			

○ 융자금 상환계획(구체적으로)

○ 담보 제공 계획(구체적으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u>관리 운용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142조에 따라</u> ----- ----- ----- ----- ----- <u>관리 · 운용하는데</u>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세입 · 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34조제3항에 따라</u> ----- ----- -----.</p>
<p>제2조의1(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u>규정에 의한</u>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u>이라 함은</u> 용자지원에 관하여 <u>구청장과</u>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의2(용어의 정의) ----- ----- <u>뜻은</u> -----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u>따른</u> 기업을 말한다. 2. ----- <u>이란</u>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p>

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생략)

3. 기타 수입금

②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③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용자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 (생략)

3. 용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채액 보전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 각 호-----.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수입금

② 서구청장-----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기예금 등-----.

③ -----
-----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용자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채액 보전

4. -----
- 판로개척 등 -----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의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1명 이내

2. 3. (생략)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

5. 그 밖에 -----

② -----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설치·운영
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7명 -----
-----.

③ -----

----- 각호----- 사람
-----.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로 한다) --

2. 3. (현행과 같음)

4. -----

장 추천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용자시기에 맞추어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사람

④ -----

-- 질병 및 그 밖의 -----

----- 위촉을 해제----- . -----
----- 전임자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명-----

-----.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각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연 1회 -----

-----.

③ -----
----- 회의를 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작-----
 ----. -----

 -----.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제5조의3(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 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8. (생략)
9.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5(수당 및 여비) -----
----- 위원 중 -----
----- 범위
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6조(용자대상업체) -----

-----.

1. ~ 6. (현행과 같음)
- 7.----- 따
라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제7조(용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초에 용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신청)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자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용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조건) ① (생략)

②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매년 정한다.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내외로 낮게 정한다.

제7조(용자계획의 공고) -----
매년도 초-----

제8조(용자신청) -----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
제8조에 따라 -----

제10조(용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

③ -----
 ----- 3퍼센트 내외-----

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⑥ (생략)

⑦ 용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추가용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

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생략)

② 제10조제6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구청장은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
---관한 사항은-----
----- 따라 -----.

⑥ (현행과 같음)

⑦ ----- 상환방법 등-----
----- 따라 -----.

제11조(추가용자) ----- 연도중 ----- 범위-----
-----.

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제6항의 -----

일반 시중은행----- 따른
-----.

③ -----

----- 상환기간 전이라도 -----
-----.

1. ----- 목적 이외-----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변경사항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용자상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처리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2. ----- 따른 -----.

제13조(변경사항통보) ----- 그 밖의 -----.

제15조(보고 등) ① -----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 기업지원과장으로 ----- 기금업무 담당 -----.

②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 규정 -----.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② ----- 제1항에 따른 ---

----- 매 회계연도-----

--서구의회-----
-----.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
-- 필요-----
-----.

관계법령 발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